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0 | 2024.01.30 (2024.01.22~01.28)**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4.01.2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22~01.28)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는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속도 혁신: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 완료, A B C 기존 노선 연장, D E F 신규 노선 신설,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② **주거환경 혁신: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 단축 노력), ③ **공간 혁신:철도 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 완비 등) 그 외 추가로 ④ **미래·생활: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한 바,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신(新)소비경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메가트렌드를 기회로 활용하며, 해외무역관 전면 개방을 통해 글로벌 수출원팀 코리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 논의, ▷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며,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 전면 개방, ▷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을 목표로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의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에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국민안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 등 물그릇 획기적 확대, 다각적 대체수자원 개발, 신규 산단 용수공급 등 맑은 물 적기 공급,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원·녹색산업 수주·수출 '24년 22조원 달성,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 구축, 국제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 혁신 지속,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커피박 등 순환이용으로 대체자원 확보, **[환경서비스]**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 지정,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 제공,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 약자 복지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이용 편의 제고, 폐배터리 무상수거 등 체감형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며, ②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③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④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 ⑤ **(공시기간 합리화)** 현행 자산담보 대출이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 ⑥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보증공사의 변경된 보험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변경하고,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 보완,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내용·공개절차 등의 세부기준 규정, 우회덤핑을 통한 덤프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해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규정,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 설정,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계수기의 신청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연장하고,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할인의 범위를 주류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확히 하기 위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초전도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인프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초전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달성하고 초전도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하태경의원 등 10인)」,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제412회임시국회의 회기는 1/25(목)~2/8(목)까지 25일간으로 확정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가 2/1(목) 14시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무위원회에서는 1/29(월) 10시 민생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발표(법제처)	8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국토교통부)	10
•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12
•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환경부)	13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금융위원회)	1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 지원(금융위원회)	18
•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금융감독원)	20
• 중소 수출입기업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 적극 추진(관세청)	21

II. 입법(안) 동향 [바로가기](#)

1. 공포 법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22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보건복지부)	2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24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24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25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2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7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9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3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4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4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청)	3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3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3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3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 38
-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하태경의원 등 10인) 38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3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39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4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4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40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1.25.) 바로가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2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4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5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5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6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6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6
- 문화재영향진단법안(수정안) 46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7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47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안)	4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22~01.28) [바로가기](#)

- [통상관세] 미국의 반덤핑조사 관련 베트남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발표 -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2024-01-23
-----	--	------------

정부는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임

입법 형식별로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14건,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150건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은 링크 참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

연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1	해양수산부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2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
4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 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

국회제출 소관 부처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1								23			1	25
교육부										1	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1	1				1	6
외교부									2			1	3
통일부								1		1			2
법무부	4	5				1				2			12
국방부							1				3	3	7
행정안전부						3	1		4	6			14
국가보훈부						3			1		8	1	13
문화체육관광부							1			2			3
농림축산식품부							1	2	2	1	1		7
산업통상자원부									1	1	1		3
보건복지부		1								1		1	3
환경부											1	2	3
고용노동부							1		2			3	6
여성가족부		2											2
국토교통부								1			1		2
해양수산부						3		2	2			2	9
중소벤처기업부								2			2		4
식품의약품안전처							3						3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3	5
금융위원회									1			1	2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대통령경호처								1					1
국가정보원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공통)과기부·행안부												1	1
(공통)과기부·방통위										1		1	2
합 계	5	8	-	-	-	14	12	12	38	19	18	24	150

관계부처 합동
(국토교통부)「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2024-01-25

정부(국토교통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속도 혁신: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 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
 -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 (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
-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
 -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 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 예정
-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

② 주거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
 -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 마련
 - * 1)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 · 종점 다양화, 2)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3)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
-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 단축 노력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
 -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은 정상 투자)
 -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 정상화 추진 계획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 완비

-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

• 고속도로 정체 문제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

-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 추진

④ 미래·생활 :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

•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 구현 조기화

-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추어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없이 추진
- 심야시간,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

•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

- 대중교통 이용(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 도입('24.5)
- 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MaaS* 활성화 지원
-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 조성

<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 개최

-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신(新)소비경향,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메가트렌드를 기회로 활용
- 해외무역관 전면 개방...글로벌 수출원팀 코리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

2024-01-24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 논의

-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 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 미국시장에서는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 선점, 중국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 공략, 아세안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
-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임
-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 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

②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 문체부 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 기능을 강화할 계획

-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 전면 개방

③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

< 2024년 10대 세계시장별 수출목표 및 진출전략 >

구분	시장	'24년 수출목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❶ 주력 시장	북미	1,387억불 (+10.7%)	공급망 재편의 핵심파트너 위치 선점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첨단산업 등
	중국	1,878억불 (+10.3%)	산업수요 세분화, 新소비 트렌드 공략 * 조선 기자재, 간편식품, 의료용 기기 등
	아세안	1,540억불 (+12.8%)	역내 밸류체인(RVC) 진입, 한류 영향력 활용 * 간편식품, 전기차·충전시설, 태양광패널, ESS
❷ 전략 시장	EU	850억불 (+11.0%)	공급망 재편, 탄소 중립 기회 선점, 방산수요 공략 *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중동	300억불 (+7.9%)	경제협력 확대 연계 수출·수주 지원 강화 *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산업, 재난복구 인프라
	일본	310억불 (+6.9%)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신규 투자 확대 활용 * 스마트팩토리, 전기차·전장부품, 재생에너지
	서남아	235억불 (+13.0%)	글로벌 투자 확대, 중산층 수요 증가 * 일반기계, 화장품·식품, 전기차 부품
❸ 신흥 시장	중남미	264억불 (+10.9%)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진출 확대 *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제약
	CIS	145억불 (+9.0%)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공급망 재편 대응 * 자동차 부품, 스마트팜, 드론, 신재생에너지
	아프리카	101억불 (+11.0%)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거래선 집중 발굴 * 의료기기·의약품, 자동차·중고차, 에너지기자재

2024년 수출 목표 7,010억불

(전년 대비 10.8% 성장 목표)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2024-01-25

환경부는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함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함.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함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함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 등 물그릇 획기적 확대
- 다각적 대체수자원 개발, 신규 산단 용수공급 등 맑은 물 적기 공급
-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 강화

②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원 + 녹색산업 수주·수출 '24년 22조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③ 에너지 혁신기반조성에 약 144억 원 투자

- 향후 예측되는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핵심인재양성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안) >

구분	창업벤처	물	전기차 폐배터리	Post- 플라스틱	청정 대기	폐반도체	태양광 폐패널	바이오 에너지	자원순환 기술	수열
지역	인천서구 (조성)	대구 (조성)	포항 블루밸리	부산 생곡	광주	구미	해남	보령	제주	춘천

- 국제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 혁신 지속
-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커피박 등 순환이용으로 대체자원 확보

<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 공급망 활성화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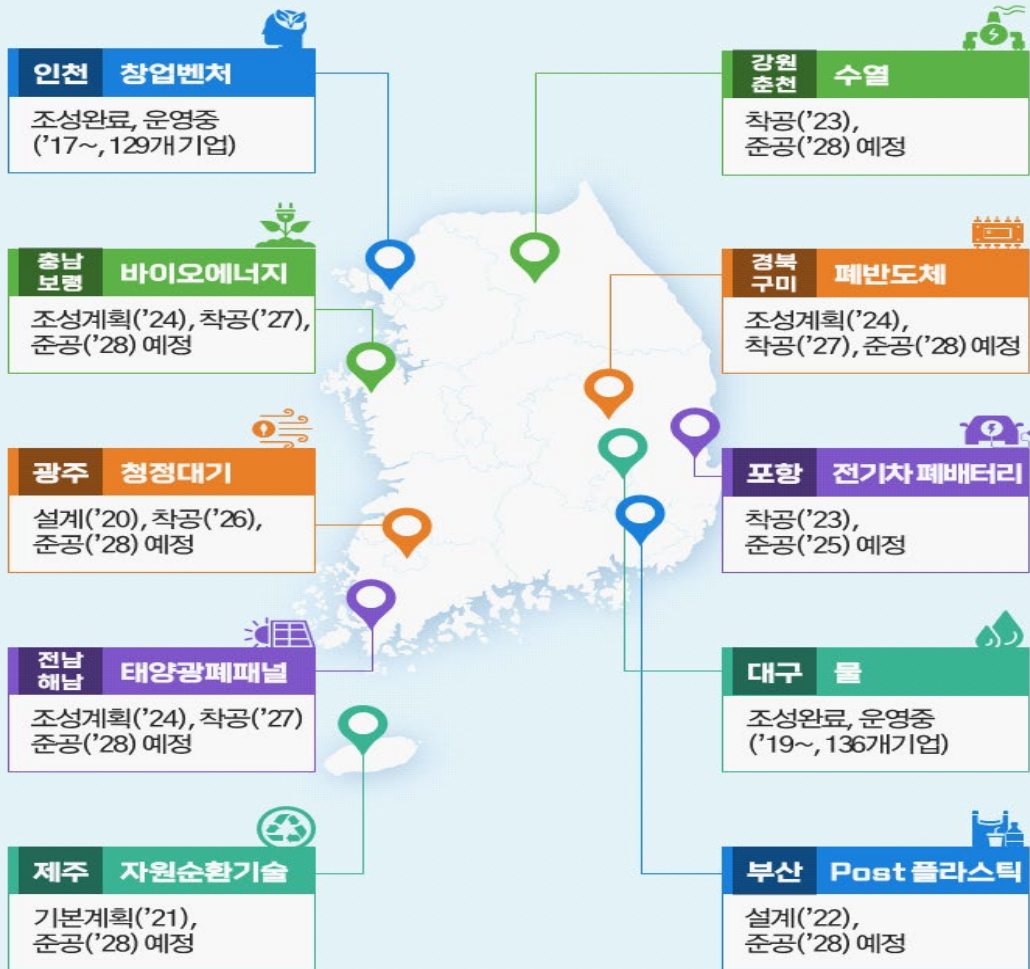
폐배터리	•(수 거) 거점수거센터 확대: 무상수거, 폐차장, 정비소 등 •(이력관리) 제조~순환이용 전주기 이력정보시스템 구축(~'27, 나주) •(성능평가)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구축(~'25), 신속·대량 평가(1~2대/일→150대/일)
폐식용유	•바이오연료·원료로 활용하는 재활용기준 마련 * '25년부터 EU 내 이륙 비행기의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
공정부산물	•(유가금속) 유해성 관리 방안 마련 → 순환자원 지정 •(폐원단, 식품부산물) 지자체, 유관단체, 업체 등과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커피박	•대체연료·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사업모델 발굴(340억/년 매립비용 절감)

③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 지정,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 제공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 약자 복지 확대
- 탄소중립포인트 이용 편의 제고, 폐배터리 무상수거 등 체감형 서비스 강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국 확대 10개소 조성



금융위원회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 전환사채(CB)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 활성화
-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

2024-01-23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20일(목)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 의무 부과

- 현행 규정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시)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에 대한 공시 강화

- 그간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음
- 이에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사유, 향후 처리방안(예: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임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 추진*

* 既추진중, '22.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②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 합리화

-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
- 다만, 기업 구조조정과 같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70% 미만) 허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통상의 사유(자금조달, 자산매입 등)를 이유로 최저한도(70%) 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주주총회 동의(건별)를 구한 경우에만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예: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 등) 허용

•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

-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만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따라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

③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 지난 2023년 1월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이 중 총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여 총 33인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함
- 향후에도 조사 진행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할 예정임

<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1. CB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 부과	증발공 개정	금융위	~'24.2분기
▪ 만기 전 취득 CB에 대한 공시 강화	증발공 개정, 공시규정 개정	금융위·거래소	~'24.2분기
▪ 사모CB 발행시 공시의무 강화(既 추진중)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22.12월~
2.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 사모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증발공 개정	금융위	~'24.2분기
▪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	증발공 개정	금융위	~'24.2분기
▪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 합리화	증발공 개정	금융위	~'24.2분기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건전한 성장 지원

2024-01-24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음

당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여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음. 그리고, '20.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임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에서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4천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를 인하(0.24→0.164%)하였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함. 그럼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임.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②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임.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음

③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 온투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 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하여,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④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

** '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천만원까지 허용했었고, 추후 한도 완화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여 법제화 추진시 반영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증액함

⑤ 공시기간 합리화

-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임

*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인터넷상 실시간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가능

⑥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⑤ 공시기간 합리화

-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 '24년 온투업권 규제개선 과제 추진 일정 >

구 분	추진 내용	일 정
①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4.1분기
②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가이드라인 마련	'24.상반기
③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4년중
④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시행령 개정	'24.상반기
⑤ 공시기간 합리화	감독규정 개정	'24.상반기
⑥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감독규정 개정	'24.상반기

금융감독원은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IPO증권신고서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구체화*

*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표한('23.11.24.) IPO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일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
- 잠정실적이라는 사실 및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 기재보완·정정·효력재기산 등 세부 운용기준 마련

- (기재기한)최초 제출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일부 미기재 포함)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 보완*

* (예) '24.1.2. 최초 제출시 '23.12월 잠정실적 미기재 → 1.23.까지 보완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 (기재추가)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예) '23.12.22., 최초 제출시 '23.11월까지의 잠정실적 기재 → '24.1.17. 효력발생하는 경우 '23.12월 잠정 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 제출 필요

- (정정 기한)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수정사항 등 발생시 청약 전일까지 자진 정정 가능
- (효력재기산)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 투자자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에 간단·명료하게 요약 기재

② 투자계약증권 투자위험 기재요령 보완

▷ 투자계약증권 서식에 포함된 작성지침 외 '23년 중 실제 심사과정에서 투자위험 요소로 고려하였던 사항을 기재요령에 반영

- (이해상충 관련)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래의 공정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 명시
- (청약·배정 관련) 청약·배정·납입 방법(청약증거금 여부, 예치금 보관방식, 균등·비례배정, 청약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를 명확히 기재
- (수수료 관련)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근거와 공동사업 청산 시 손익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 적극 추진

2024-01-22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내용 >

분 야	원 칙	지 원
① 관세조사 유예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관세조사 유예(1년)
②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신고수리일~15일 이내 관세납부 ▪ 신고수리일~15일 이내 관세납부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 허용
③ 담보제공 생략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④ 환급금 신속 지급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⑤ 부가세 납부유예	▪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	▪ 통관 후 정산시 까지 납부유예(최대1년)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약 7천억원을 지원함

<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 >

구 분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합계
업체수	28,373	124	638	424	29,559
지원금액(억원)	-	643	128	6,347	7,118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원 대상)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

<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직·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일자리옴므기업 ▪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 러·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② (지원 분야)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4-07-24 시행예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1조제1항제1호, 제16조의3 신설, 제28조제1항제1호)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22 시행
-------	---------------------------------	---------------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증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7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2025-01-24 시행예정
-------	--	-----------------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 (제6조)
- ②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제7조)
- ③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8조)
- ④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9조)
- ⑤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등의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제10조)
- ⑥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및 제13조)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4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2024-07-24 시행예정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48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48조제4항, 제53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27 시행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의 제조업소, 공장 등 설치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조업소,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2조제2항제1호다목 신설, 제84조제8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2024-07-24 시행예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5조제1항제1호, 제108조제1항제2호 등)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24 시행예정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8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4항 등)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2024-07-24 시행예정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추가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9조의2, 제58조의2제1항, 제58조의2제8항, 제58조의2제9항, 제58조의3제1항제3호 등)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24 시행예정

(다만, 제48조제4항 및
제7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며,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3조의5 신설, 제23조의6 신설, 제44조의7제5항 신설, 제47조의7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법률

2025-01-24 시행예정

(다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및 제3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위원회 등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및 제7조)
- ③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허가·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 (제6조)

- ④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 등을 규정함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⑤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제29조 및 제30조)
- ⑥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를 도입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⑦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영향평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요청,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제36조부터 제48조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10-24 시행예정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거래계획에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73조의3 신설, 제429조제5항, 제429조제6항)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5. ~02.14.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액배당 시 과세하며,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 금액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제외하는 한편,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보증공사의 변경된 보험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변경하고,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안 제3조제1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농업에서 제외되고, 연금 및 공제업을 연금업과 공제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②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안 제3조의2제1항)
 - 「법인세법」에 따른 신탁자 과세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탁자 과세요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수익자가 2이상인 요건을 삭제함
- ③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안 제10조제1항)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학교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을 추가함
- ④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안 제12조제1항제5호)
 -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안 제17조 신설)
- ⑤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안 제17조의2제5항 신설)
 -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 및 자기주식 처분 시 지분비율 변경에 따른 이익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으로 함
- ⑥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안 제11조제10의2호 신설, 안 제19조제23의2호 신설 및 안 제70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 산입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안 제63조)
- ⑦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허용 (안 제19조제3호 신설)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⑧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인정 명확화 (안 제19조제3의2 신설)

-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안 제21조제2항 신설)

- 손금불산입 대상인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포함됨을 명확화함

⑩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안 제23조)

- 금불산입 대상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법률상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을 추가함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⑪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안 제50조의2제4항제3호 신설)

-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⑫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안 제64조제6항제9호)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률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추가함

⑬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안 제68조제7항 신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개발사업의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하는 경우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⑭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명확화 (안 제72조제2항제6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⑮ 감액배당 및 무증자합병 시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안 제72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자본잉여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명확화함
- 완전자법인을 합병하거나 완전자법인 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명확화함

⑯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규정 보완

- 지급배당 소득공제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안 제86조의3, 제120조의4)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연결납세 관련 규정 보완 (안 제17조의2, 제120조의12)

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예외적 확대 (안 제94조제1항 단서)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⑱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안 제120조의18제1항)

- 연결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도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허용함

①⑨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안 제120조의17제4항, 제120조의22, 제120조의26)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연결법인별로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의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모든 결손금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손금의 대가로 정산하도록 함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결손금 공제가 없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손금이 있는 연결법인별로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 정산하도록 함

②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안 제159조의2제7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대상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팩스: 044-215-8073)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5.
~02.14.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상한액 규정 (안 제10조의2)

-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월 15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② 해외근로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안 제16조)

- 외항선원, 원양어업선원,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③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범위 조정 (안 제17조의3 및 제18조)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함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본인 또는 지배주주 등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④ 사용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안 제55조제1항)

- 사용자 본인에 대해 가입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⑤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안 제81조)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가액을 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

⑥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예외적 확대 (안 제117조제1항 단서)

-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 조세조약 중단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에 러시아 정부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초과 과세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

⑦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안 제118조의5)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을 폐지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중 본인부담금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⑧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추가 및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안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함

⑨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범위 구체화 (안 제216조의5 신설)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 규율대상인 국외지배외국법인의 범위를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여 지배하는 외국법인등으로 하고 주식기준보상의 개념을 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67)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5.
~02.05.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공개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부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해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안 제1조의3)

- 관세법 해석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나,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안 제71조의2 등 신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요청인의 조사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제출 자료·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요청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③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안 제141조의5)

- 관세포탈범의 성명·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④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안 제141조의13제2항, 별표2의2)

-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를 전송 가능하도록 함

⑤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안 제251의2조)

-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 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설정함

⑥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 규정 (안 제263조의3)

- 관세청이 법무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록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tel:044-215-44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5.
~02.14.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이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정외국법인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안 제64조제5항)

- 외지주회사 운영과정에서 자회사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 판정 시 고려될 필요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을 합산

②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안 제75조, 제146조)

-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규정
- (금융거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추가

③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계좌 판단기준 명확화 (안 제92조제7항)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바, 공동명의계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안 제95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종사자를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관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 함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및 해외투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안 제97조, 제99조)

-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투자 신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세당국이 소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기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 규정
- 제출기관을 소명을 요구하는 주체인 과세당국으로 확대 및 일치시켜 납세자 혼선 방지

⑥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안 제98조, 제148조)

-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외신탁재산 가액 산정 관련 하여 시가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함
-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재산가액의 10%이하(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⑦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안 제100조제2항)

- 국부펀드의 정의를 규정함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안 제107조의2)

-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으로 배분되는 경우로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소득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를 규정함

⑨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안 제116조의2)

-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세율 15%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해당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의 산정 및 이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⑩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안 제118조2)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이에 따른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한국에 소재하는 모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적격소재국추가세를 납부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⑪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안 제125조제4항)

-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부합하는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⑫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안 제129조제4항)

- 조직재편 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경우의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산 계산방식을 규정함

⑬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안 제136조제4항 및 제137조제1항)

-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정가치 과세 및 과세 분배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규정함

⑭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 (안 제144조제7항)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시행 초기 전환기 중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기획재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5.
~02.05.

자동계수기의 신청 및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및 승인 기간을 연장하고,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할인의 범위를 주류의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계수기 신청·승인기간 연장 (안 제30조)

- 주류제조자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신청하는 납세증지 면제신청 기간을 사용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조정함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제조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조정함

② 주류 할인판매 금지규정에서 금지하는 할인의 범위 명확화 (안 제41조)

-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중인 금품제공 등의 금지규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할인 등의 범위를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장려금, 매출할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2.
~03.0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의해 폐지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삭제, 안 제11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심의사항, 구성·운영, 위원 지명 철회 및 해촉 규정 삭제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심의 근거 삭제 및 자구 수정
- ②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24조 신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감경대상, 감경 범위 등 세부 기준 신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전화: 044-204-7749, 팩스: 044-204-7759\)](tel:044-204-7749)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26.
~02.07.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2024. 2. 17. 시행)

이에 따라, 개수명령 미이행 시 처분기준 마련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수입업 허가 면제 조항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등 면제 대상 명확화 (안 제5조의2, 제26조의2)
 - 현재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업허가 등의 면제가 의료기기법에 근거하고 있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조·수입업허가 등의 면제 대상 근거법령을 명시하고자 함
- ② 개수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안 별표 1)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수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39, 팩스: 043-719-3730)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23.
~03.04..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 후 다시 그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사용중지 또는 사용재개를 할 수 있는 바,

이는 신속히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대행제도를 도입하며, 법 제38조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 제33조에 따른 양벌규정임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 제34조에 따른 양벌규정인 법 제38조제2항의 벌금액보다 적거나 같게 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 간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신고기한 현실화 (안 제11조의2제2항)
 -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 ②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 (안 제18조제2항 등)
 - 건축·전기·화공 등 분야별 전문 역량을 소지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대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의무, 결격사유 및 성실의무 등을 정함
- ③ 양벌규정의 벌금액 상향 (안 제38조제1항)
 - 현행 양벌규정의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 문의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23.
~03.04.

일련의 절차로 진행되는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범위를 기술검토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험물의 성상 판정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과 구분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안 제22조제2항제2호)

- 종전에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허가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일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이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일 때에도 해당기관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

②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 및 판정기준 개선 (안 별표 1)

-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100킬로그램·2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위험물의 품명을 기준으로 지정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지정수량 200킬로그램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구분에서 200킬로그램을 삭제하고, 지정수량의 판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문의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23.
~03.04.

일반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내진(耐震)설계를 하여 설치하나,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내진설계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한 사항을 수검대상의 관계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결과 관계인의 개선 노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부적합한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며,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보호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해당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험물시설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명시 (안 제46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하는 규정 신설

② 관계인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개선 이행력 제고 (안 제71조제5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에 수검대상의 관계인 외 소방서장을 추가함

③ 자동차 충돌대비 이송취급소의 보호설비 기준 구체화 (안 별표 15)

-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그 지지물을 자동차의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설비의 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임을 고려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위임규정을 신설함

※ 문의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tel:044-205-7482)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23.
~03.04.

주유취급소에서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대형 차량에 경유를 주유할 때 1회 연속하여 해당 차량의 연료탱크에 완충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 상한 완화 (안 별표 13 X V 제2호마목)

- 경유의 1회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이 200ℓ 이하 및 4분 이하이던 것을 각각 600ℓ 이하 및 12분 이하로 하도록 함

※ 문의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tel:044-205-7482)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024-01-23 발의
-------------------	--	---------------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하태경의원 등 10인)	2024-01-23 발의
-------------------	---------------------------	---------------

초전도기술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관련 산업으로 초전도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전도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초전도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초전도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인프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초전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달성하고 초전도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정부로 하여금 초전도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② 민간 부문의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초전도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8조)
- ③ 초전도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④ 초전도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4조)
- ⑤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초전도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초전도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초전도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⑥ 초전도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중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2024-01-23 발의

최근 공연·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압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2024-01-25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6항)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2024-01-24 발의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 가격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스킵플레이션(skimpflation)’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제품 가격 및 포장에 그대로일 경우 소비자들은 용량변경 등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3 및 제31조제1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01-22 발의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취수량 대비 물 재이용률 비율이 0.8%(쿠웨이트 35%, 이스라엘 18%, 싱가포르 14%)로 집계되어 물 재이용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축 연면적 기준은 지나치게 큰 규모를 요구하는 점, 생활하수시설은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 물의 재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고,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주택에도 중수도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01-2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1.25.)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01.25.) 심의안건 요지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등록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미부과 규정을 삭제함
-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함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함

정무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함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는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함
-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시정 방안 자진 제출 제도를 도입함
- 공정위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증권시장에 상장된 신용조사회사와 채권 추심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의무제를 폐지하도록 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여 유료 고객들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형태를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함
-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마련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금지함

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함

정무위원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에 있는 자가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면허 제한기준을 강화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실시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회의록의 공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
-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등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생·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
-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생명연구데이터를 정의하고 이를 생명연구자원에 포함시키는 등 정의 규정을 정비함
-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 실적을 신규사업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역 정보통신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계획 수립 ·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 지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첨단기술기업이 지정 취소되거나 연구소 기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다시 지정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지기간을 신설함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책 이행명령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함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행정안전위원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상시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실무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업무 일부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 2010년 부산 주상복합 화재를 계기로 시급히 제정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함
- 애니메이션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영향진단법안(수정안)

-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영향협의를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함

-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하고 허가절차를 일원화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함
- 지원대상 협정의 범위를 FTA 뿐 아니라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정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자금용자를 폐지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함
-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관련 조달청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함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한도를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
-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한시적 인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당해 인정 및 안전성 심사 결과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안)

- 제명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함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수립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도시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례를 인정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 및 소프트웨어 관리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차종 등을 고려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
-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의 관리를 강화함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2/1(목) 14:00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1/29(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 민생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및 정치테러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2/1(목) 10:0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1/30(화) 10:30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제86회 정기세미나 -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김영진 · 우신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01/30(화) 14:00	Made by AI 표기 의문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이상현 · 김윤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30(화) 14:00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 대토론회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심으로	윤주경 의원실, 광복회 등	국회도서관 강당
	01/30(화) 14:00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강득구 · 강민정 의원실 등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01/30(화) 15:00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 죄 개정 입법토론회	박주민 · 김승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01/31(수) 14:00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강성희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01/31(수) 14:00	친환경 건강식품 토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01/31(수) 14:00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	윤상현 · 김병욱 (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02/01(목) 10:00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과 한반도 군사위기	박병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02/01(목) 15:00	2024 관광지원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 다양한 관광산업 관광 강국 대한민국	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01/31(수)	「금주의 서평」 제664호 발간 - 도서명 :이주하는 인류 - 저 자 : 샘 밀러	국회도서관	
	01/30(화) 10:00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정관 405호
	01/30(화) 14:00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1/23(화) 10:00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한정애 · 강은미, 강성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01/23(화) 14:00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김성환 · 김희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24(수) 14:00	[2024 디지털 정책포럼] - 2024년 디지털 트렌드 전망과 AI 생태계 조성 방안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01/24(수) 14:00	소방·보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01/24(수)	「World&Law」 제2024-2호 발간 - 농업, 스마트하게 혁신하려면?	국회도서관	
	01/24(수)	「금주의 서평」 제663호 발간 - 도서명 : 창조적 시선 - 저 자 : 김정운		
	01/25(목)	「현안, 외국에선?」 제75호 발간 - 네덜란드의 농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미래를 위한 노력		
	01/22(월)	「이슈와논점」 제2178호 발간 -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01/23(화)	「이슈와논점」 제2179호 발간 - 프랑스의 최연소 총리 임명과 청년 정치		
	01/23(화)	「NARS 브리프」 제30호 발간 -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01/24(수)	「이슈와논점」 제2180호 발간 - 과세표준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		
	01/25(목)	「이슈와논점」 제2181호 발간 -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22.~01.2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01/25(목)	통상관세	미국의 반덤핑조사 관련 베트남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재검토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